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96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위성곤 · 조계원 · 정준호
박희승 · 김기표 · 강준현
박정현 · 이학영 · 박지혜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실시된 소방청의 위험물시설 전수검사에서 1만 258개소의 위험물시설 중 4,020개소에서 5,309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된 바 있음. 이 중 정기점검의 부실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불량사항의 89.5%인 4,749건으로 점검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24년 기준 위험물시설은 10만 개소에 달하며, 고위험군 대형시설도 증가 추세로 체계적·전문적 점검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국가 차원의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없고, 정기점검 또한 관계인 자체점검 중심으로 독립성·객관성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소방청으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점검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
2.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3. 위험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4. 위험물의 유통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분석
5.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 및 원인의 분석
6. 위험물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위험물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8. 위험물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조성
9.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위험물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본문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를 “등록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하고, 같

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탱크시험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2.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항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임원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⑤ 시·도지사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위험물시설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기술적 점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를 “제조소등 가운데”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를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그 등록 또는 업무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을 “(탱크시험자 등에 대한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를 감독하며”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2. 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3.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를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취소

제31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

7의3.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에 종사
하는 자

제3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
하고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를 한 자

제36조제8호 중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제16조제6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9호 중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제16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를 “제23조에 따른 탱크 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한다.

9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의3. 제1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시설 점검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제38조제1항 본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제4항·제5항(제7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호, 제36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고, 제16조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3호(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시설 점검업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

제3조(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정기점검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3(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u> <u>2.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u> <u>3. 위험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u> <u>4. 위험물의 유통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분석</u> <u>5.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 및 원인의 분석</u> <u>6. 위험물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u> <u>7. 위험물안전관리 전문인력 양</u>

성

8. 위험물안전관리에 필요한 기
반조성

9.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년 위험물안전관리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
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
획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생 략)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

-----.

③ -----

----- 제1항에 따라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
에 종사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
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는 그 대표자가 제1
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신설>

--. 이 경우 등록 신청과 등록
증의 발급, 그 밖에 등록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탱크시험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

등록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6항-----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
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

⑤ 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5. (생략)

⑥ (생략)

<신설>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⑥ -----

-----.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6조의2(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

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항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임원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⑤ 시·도지사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
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5. 위험물시설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

이 경우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기술적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u>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 ④ (생 략) 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u>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u>점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조소등 가운데</u> ----- ----- ----- ----- ----- ----- ----- ----- -----.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그 등록 또는 업무에</u> -----
--	---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탱크시험자 등에 대한 명령) -----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를 감독하며-----
-----.

제28조(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2. 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3.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② ~ ④ (생 략) 제29조(청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1. (생 략) 2. <u>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u> <u><신 설></u>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u><신 설></u> 8. ~ 10. (생 략)	<u>업무를 수행하는 사람</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청문) ----- ----- -----<u>처</u> <u>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u> 1. (현행과 같음) 2. <u>제16조제6항</u>----- ----- 3. <u>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취소</u> 제31조(수수료 등)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u> 7의3. <u>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u> 8. ~ 10. (현행과 같음)
--	--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4. ~ 9. (생략)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를 한 자

4. ~ 9.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6조제6항-----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u>제16조제6항의</u>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u><신 설></u> <u><신 설></u> 10. ~ 12. (생 략) 13. <u>제23조의</u> 규정에 따른 탱크 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 15. (생 략) 제3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 9. <u>제16조제7항</u>----- ----- ----- ----- 9의2. <u>제16조의2제5항에</u>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의3. <u>제16조의2제6항을</u> 위반하여 위험물시설 점검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 12. (현행과 같음) 13. <u>제23조에</u> 따른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14. •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양벌규정) ① ----- ----- ----- ----- ----- ----- -----1억원 -----
--	---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2. (생략)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의2. ~ 9. (생략)

② ~ ⑤ (생략)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징수

-----3억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2 제2항-----

6의2.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500만원-----
-----.

한다.

---.